

조보(朝報)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필사조보의 기원, 명칭, 폐간시기, 기문기사 성격과
민간인쇄조보를 중심으로*

김영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조보의 기원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조보의 명칭 및 폐간시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문기사 성격, 선조 때 발생한 민간인쇄조보 발행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내부적 통보매체인 필사조보는 조선왕조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말경(대략 성종대)에 탄생하여 중종조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정부의 인쇄관보와 한말의 우수한 민간 일간지들이 발행되었던 1907년 11월(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였던 비서감이 폐지 됨)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보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조보(朝報)였고 그 다음이 저보(邸報)였다. 다음으로는 조지(朝紙), 기별(奇別), 난보(爛報), 경보(京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용어들 예컨대, 기별지(奇別紙), 저장(邸狀), 저지(邸紙), 보장(報狀), 한경보(漢京報), 영기(營奇)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기별’은 조선조 중반(중종대-인조대)에, ‘조지’는 조선조 후반(숙종대-고종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필사조보는 폐쇄성과 난초체라는 속기로 필사되어 주요 독자층인 사대부들이 구독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1577년(선조 10년) 8월 서울에 사는 수명의 민간인(양민층인 其人)들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 목활자로 인쇄조보를 발행하였다.

민간인쇄조보가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시점에, 선조는 “사국(史局)을 사설화(私設化)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간조치하고 신문발행 관련자 30여 명을 유배시키고 언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시대 일부 기인(其人)들이 중국 인쇄조보를 본 따 만든 민간인쇄조보(목활자본)는 그 당시 중국의 인쇄신문 형태(길이 20~25cm, 폭 10~15cm, 면수 5~10쪽)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kimyj@kyungnam.ac.kr

민간인쇄조보는 선조의 탄압정책으로 약 3개월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하고 활판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문이다.

주제어: 필사조보의 기원, 조보 명칭, 조보 폐간시기, 조보 형태, 기인(其人),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

1. 서언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언론통사(通史)는 1955년에 발행된 성준덕의 『한국신문사』인데, 이 책머리에 조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온다(1955, 1~2쪽).

우리나라에서 보도적인 사명을 띠고 발간된 최초의 간행물로는 선조 11년(1578년)에 정부의 양해하에 나온 조보이다. 이는 당시 인텔리들로서 사환(史宦)의 등용문(科擧)에 떨어져 백두(白頭)로 있으면서 관보를 발간한 것이었으니 보도의 핵심은 관리의 임면(任免)이며 한편 정부의 동향 등도 보여주기도 하는 신문지적 사명이었다.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발달된 활자를 이용하였고 편집의 체계는 기술면보다도 누구든지 보기 좋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발행된 지 수개월이 못 되어 선조대왕께서 진노하시사 조보편집자 일동을 상당한 엄벌에 처하였으니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신문지법 혹은 공안법 같은 데 저촉되었던 것이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의 신문사가 필화사와 병생(並生)되는 이유도 냉소를 금치 못할 바라 하겠다. 조보는 확실히 관보로서 발간되었으나 이에서 파생하여 저보(邸報)라는 것이 또 있었다. 우리나라 상대에는 각도부군(各道府郡) 등 지방행정청으로부터 의례히 중앙에다가 경주인(京主人; 주재원)이 있어 이는 관계소식을 각각 자기 지방청으로 적어 보내는 것이 주요사명이었으니 이를 ‘기별’(奇別)이라고도 하고 ‘저보’라고도 하였다.

즉, 승정원(承政院, 國務院)에서 처리하는 사행(詔命, 章奏, 관리任免 등)을 보도하

여 매일 아침마다 반포하는 기주축(記注軸)이니 기별 등은 서리(書吏)가 따로 있어서 모필로 써서 만들어내면 기별군사(奇別軍士)는 이를 즉시 분전(分傳)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일종의 속기법도 생겼었고 호외 매한가지로 긴급할 때에는 ‘무시(無時)라는 특별기별도 있었다. 기별은 통지(通知)란 말이니 보(報)를 의미한 것이고 또한 보(報)는 보도를 말한 것으로 경성(警醒)을 의미한 것이다.

성준덕은 우선 근대신문매체인 『한성순보』가 나오기 약 300년 전(필자주: 선조 11년 ‘1578년’은 착오이며 선조 10년 8월에 발행)에 활판으로 찍어낸 전근대 신문매체인 『민간인쇄조보』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저보(邸報)나 기별(奇別) 등으로 불렸던 조선조 필사조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관보인 조보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발행하였다. 중앙부처의 각 아문에서 편집기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별서리(奇別書吏)들이 조보 원본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필사해오면 배달부 역할을 수행했던 기별군사(奇別軍士)들이 각자 해당부처에 전달하였으며, 각 지방에로의 전달은 해당 경주인(京主人; 京邸吏)나 계수주인(界首主人) 등이 매일 규칙적으로 출방한 조보 이외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호외(특별기별 즉, 分撥)도 발간하였다. 필사조보는 속기체인 기별초(奇別草; 亂草體)로 쓰인 까닭에 이 글씨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기에 매우 불편하였다.

최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성준덕의 조보 이해는, 약술되어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다. 위의 저작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대한신문연감 1956』에 당시 자유신문사 부사장으로 있던 이상협이 관보인 필사조보에 대해 아주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이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1955, 1쪽).

1960년 언론사학자 최준은 『한국신문사』를 발간하면서 신문전사(前史)적 현상으로 조보에 대해 주목하고 관보인 『필사조보』와 민보인 『인쇄조보』에 대해 4쪽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1983, 1~4쪽). 최준은 이 책에서 조보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간략하게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언론사 교과서 및 사전류 등에 그대로 인용되어 거의 통설로 인정받고 있다.

최준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기별제도가 있었다고 주장, 그 기원을 신라시

대까지 올려 잡고 있다. 이 기별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발달’하였으며, 조보의 원형은 조선왕조 개국초기인 태조 원년(1392년 9월 14일)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조조에 들어와서 조보 발행 기관이 예문춘추관에서 승정원으로 바뀌었으며, 중종조에 들어와서는 조보라는 용어가 『중종실록』에 많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조보발행이 본 궤도에 올랐고, 1894년 2월(음력) 승정원이 폐지될 때 조보 역시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최준은 이처럼 “필사조보가 늦어도 조선개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서, 최준은 민간인쇄조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578년(선조 11년) 당시의 민간유지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업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한 『민간인쇄조보』는 창간한 지 수개월 만에 “이웃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간되었으며, 조보발행 관련자 30여 명 역시 유배형을 받았고 언론기관인 양사(사간원, 사헌부)의 수장들도 경질되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1983, 3~4쪽).

언론인 천관우는 1963년 『한국신문전사의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조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1963, 437~444쪽). 이 논문은 앞의 두 저서를 필두로 『중국보학사』(戈公振著), 『매천야록』, 『조선왕조실록』 등을 참고하였다. 천관우는 저보가 일찍이 중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그 명칭이 다양하여 조보(朝報), 잡보(雜報), 조보(條報)라고도 불리지만, 기별은 우리 고유의 표현[吏讀]으로 보았다.

그는 조보의 기원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단언하였다. 다만, 『중종실록』에서 ‘조보의 존재’를 무수히 확인할 수 있고, 『명종실록』에서 ‘조보의 지방전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6세기경에 조보제도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중앙에 주재하면서 지방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기인(其人)이나 경주인(京主人)이 신라나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까닭에 조보의 기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언론인 이진섭은 1968년 『왕조의 언론전사 형태』라는 논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조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대체로 최준의 저서와 천관우의 논문, 그리고 『역사대사전』(이홍식편)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1968, 21~31쪽). 그 논문의 내용은 전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조보연구는 박정규(2편의 논문)와 차배근(2편의 논문)에 의해 더 한층 진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문헌정보학자 최정태(1992년)와 북한 역사학자 리철화(1995년), 언론학자 김영주(1999년), 사학자 김경수(1999년)와 김경래(2007년) 등은 조보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새로운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조보의 기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보의 명칭 및 폐간시기, 기문기사[災異記事]의 성격 문제를 비롯하여 선조 때 발행된 민간인쇄조보의 언론사적 위치와 발행주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전번역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은 기존의 조선왕조실록과 고순종실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일성록, 규장각소장사료, 사대부들의 개인문집 등을 번역·영인 내지 탈초하여 디지털작업을 진행, 다양한 사료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에 힘입어 연구쟁점들을 가능하면 교차적·실증적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다.

2. 본론

1) 조보의 기원 문제

조보의 기원 문제를 논하기 위해선 먼저 ‘조보란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를 생략한 나머지 조보 기원의 시기를 잡는 편차가 학자들마다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김경래, 2007, 210쪽).

조보발행시스템은 담당관청[承政院]의 실무책임자인 주서(注書)가 담당 승지(承旨)의 감독 아래 경향 각지에서 일어나는 중요사항들을 선별하여 기별청(奇別廳; 朝報所)에서 필사형태로 매일 출방(조보의 발행)하면, 중앙 아문의 기별서리나 경주인(계수주인 포함) 등이 필요부분을 필사하고(조보의 편집), 이것을 기별군사(奇別軍士; 朝報軍士; 奇別使令)나 경방자(京房子), 역참(驛站) 등을 통해 경향 각지의 해당관청에 전달(조보의 배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조보의 첫 출현부터 이러한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 조보의 초기 형태는 중앙의 어느 관청이 경향 각지의 정보들 가운데 알려야 되는 특정사항을 특정한 시기에 문서형태로 정리해놓으면, 의정부, 삼사, 육조 등에서 내부적으로 열람한 정도일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문서형태로 정리된 문건을 ‘조보의 원형’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역사학계나 언론학계에서 조보의 기원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낸 바는 없다. 조보의 기원설은 ① 신라시대 기원설, ② 고려시대 기원설, ③ 조선시대 기원설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조선시대 기원설은 ① 조선 초기 기원설, ② 중종 기원설, ③ 선조 기원설 등으로 나누어지며, 조선 초기 기원설은 태조 기원설, 태종·세종 기원설, 성종기원설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조보의 기원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신라시대 기원설은 ‘이두 발명’이나 ‘기인제도’ 또는 ‘역참제 정비’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고려시대 기원설은 ‘경주인 제도’나 ‘『선전소식』(宣傳消息) 발행’ ‘중추원(승정원의 전신) 제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데 반해, 조선시대 기원설은 조보를 비롯하여 그 별칭(원형과 유사물 포함)인 저보·분발(分撥)·기별·비목(批目) 등의 출현과 연결시키고 있다.

박정규(1978, 123~124쪽)는 “설총의 이두 발명과 기별제도의 탄생을 연결”짓는 최준(1960년)의 주장은 속단이라 비판하고,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관보인 조보가 발행되기 훨씬 이전에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서한신문(書翰新聞)인 저보(邸報)가 사신(私信) 형태로나마 고려시대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였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연락책인 경저리(京邸吏; 京主

의 존재가 고려 명종 8년(1178년)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의 연락체계는 신라시대의 기인(其人)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조보의 출현을 삼국시대로 상정할 수 있지만, 기초적 사료비판도 하지 않고 그 기원을 신라시대로 확정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전근대신문 연구자들(예컨대 안재홍, 이종수, 임우성, 차상찬 등)에 대해선 비판하고 있다(1978, 121쪽). 한편, 신라기원설을 주장하는 김경수는 ‘기인제도’와는 달리 ‘역참제도’(驛站制度)와 관련시켜, 이 제도가 처음 마련된 신라 소지왕(재위기간: 579~499년) 이후에 조보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1999, 734쪽).

박정규의 뉘앙스는 ‘이두발명’보다 ‘기인제도’의 정착이 기별제도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며, ‘경주인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공식적 관보 형식은 아닐지라도 ‘사신(私信) 형태의 저보[서간신문]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심증을 굳히고 있는 듯하다.

조보의 ‘고려 기원설’은 북한의 사학계에서 무게를 두고 있다. 1977년에 발행된 『조선문화사』를 통해 “봉건출판문화에서 현저한 진전이 있었던 고려 전반기에는 신문의 성격을 띤 것이 비정기적으로나마 발행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7, 359쪽). 물론 이런 주장에 역사적·실증적 사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의 사학자 리철화는 “고려시대 충렬왕 원년(1275년) 6월에 처음으로 『선전소식』(宣傳消息; 문서명을 『消息』이라 붙임)을 만들었다”(『高麗史節要』卷之十九 元宗順孝大王二 忠烈王一, “元年 六月 … 初作宣傳消息”)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선전소식』이 조보의 원형”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소식’(消息)과 ‘기별’은 같은 의미로서 ‘선전소식’이라는 문서는 ‘기별지[朝報]의 시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1995, 393~394쪽).

『선전소식』은 “고려시대 왕이 각도의 안찰사나 수령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승선(承宣; 조선조 承旨와 같음)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종이에 쓰고 그 끝에 서명하여 내려 보내던 글” — 『국사대사전』을 지칭한다. 당시 이것을 만든 이유는 “왕이 명령으로 물건을 요구할 때마다 반드시 선지(宣旨)를 내려 보냈는데, 충렬왕의 즉위 후 선지가 자주 내려가 지방에서 왕명을 맞이하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개선책으로 작은 요구사항[小事]은 선지(宣旨) 대신 『선전소식』을 통해 전달되도록 한 것”(『高麗史節要』 卷之十九 元宗順孝大王二 忠烈王一 乙亥條)이다. 이 문서전달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내전소식』(內傳消息)으로 개칭되어 나타나고 있다(『太宗實錄』 太宗 十六年 十二月 己未條, 『世宗實錄』 世宗 七年 十一月 丁巳條).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청으로 문서 형식을 통해 왕의 작은 요구사항(소식)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선전소식』을 초보적 수준의 관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비정기적이고 내용상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전달대상이 특정관청(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조보의 원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력사사전』과 북한 언론학자 리응필은 ‘조선 초기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태조조 또는 15세기 초엽 또는 중엽부터 승정원에서 조보(기별지)를 발행하였다”는 견해를 표방하였다(『력사사전』(1), 1971, 233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7, 359쪽; 리응필, 1985, 27쪽).

이러한 주장의 원조격인 최준은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예문춘추관의 사관으로 하여금 조정의 결재사항과 견문록을 기록하여 경외 각 아문에 돌렸다”(1960, 1쪽)고 하면서, 사실상 “조보의 원형이 존재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정규는 “실록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한 착오”로 규정지었다(1978, 122쪽). 필자 역시 동감이다.

1392년(태조 1년) 9월 14일 예문춘추관에서 태조에게 3가지 일을 상언하면서 ① 정전에서 이루어지는 결재사항이나 신하와의 접견사항을 사관이 입시하여 듣게 하고, ② 사관은 보고들은 바를 사초로 만들어 본관에 보내도록 하며, ③ 경향의 각 아문들이 정령시행과 권계 관련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예문춘추관으로 이송케 하고 도평의사사와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매달 조례를 써서 본관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태조실록』에 실려 있는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춘추관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上言)하였다. ① 매양 정전(正殿)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고 신료(臣僚)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으로 하여금 좌우

에 입사(入侍)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듣도록 하소서. ② 겸관(兼官)으로서 수찬(修撰)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자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史草)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으로 보내게 하소서. ③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이문(衙門)에 직접 공첩(公牒)을 보내어, 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政令)에 관계되고 권계(勸戒)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겸상조례사로 하여금 매양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조례(條例)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王)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太祖實錄』 太祖 元年 九月 壬辰條).

위의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국사 기초자료(史草) 수집을 위한 필수조치로서 사관들의 객관적 자료 수집 방안을 마련케 하고, 각 이문에서 일어나는 중요사안들을 예문춘추관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보의 원형’을 주장하는 것은 건강부회가 심하다.

‘조보’나 ‘기별’이라는 용어는 중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조보의 호외 형식인 ‘분발’(分發, 分撥) 필자주: 조보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조보발행 전에 먼저 초안하여 회람하는 일이라는 용어가 1413년(태종 13년)에 처음 나오고 있다. 이것은 ‘조선조 초기부터 조보가 발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가? ‘분발’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헌부(憲府)에서 정부(政府)의 이방녹사(吏房錄事)를 탄핵하였는데, 이달 16일 아조(衙朝)에 분발(分發)을 너무 늦게 한 것이 당상관(堂上官)들로 하여금 3엄(三嚴) 뒤에 예궐(詣闕)하도록 만든 까닭이라고 하였다”(『太宗實錄』 太宗 十三年 十二月 辛酉條, “憲府劾政府吏房錄事, 以今月十六日衙朝, 遲晚分發, 致令堂上三嚴後詣闕故也”).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조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중종 3년(1508년) 3월 14일의 기사였다. 영사(領事) 성희안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또한 지난번에 북경으로부터 요동에 도착하여 조보를 보니 논박을

받아 산관(散官)으로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中宗實錄』 中宗 三年 三月 辛亥條, “臣又頃者, 自北京到遼東, 見朝報, 則被駁作散者多矣”)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중종대에 이르러 중앙에서 발행된 조보가 변방인 요동지방까지 전파되어 중국에 파견된 관리가 그곳에서 손쉽게 읽어볼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中宗實錄』 中宗 三十七年 一月 丙申條, “凡我國奇別, 皆傳遼東云. 此奇若播遼東, 則事甚非輕, 國內亦不可輕易傳播”), 당시에 이미 국경 가까운 변방까지 조보의 전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중종 10년(1515년) 5월 경연 석상에서 대사헌 권민수가 모든 국사에 비밀이 지켜지지 않은 까닭을 경연관과 사관을 검속하지 못하는 승정원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마 조보의 국가기밀누설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중종은 답변하기를, “조보 발행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던 것이다. 그러나 비밀히 해야 할 일은 정원이 스스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다. … 무릇 조보는 다만 양사(兩司)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일체 금지할 필요는 없다”(『中宗實錄』 中宗 十年 五月 戊子條, “朝報之事, 自古有之. 然其可密爲之事, 政院自當使之秘密, 可也. … 凡朝報, 但使兩司知之, 不須一切禁止也”)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보 발행이 옛날부터 있었다’(朝報之事, 自古有之)는 이 구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은 적어도 중종 이전부터 조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종 15년(1520년) 3월 의정부에서 사록(司錄)을 승정원에 향시 파견시켜 조보를 통보하자고 요청했으나 임금은 ‘관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영사(領事) 남곤은 ‘조보의 기사에 대하여 듣는 대로 통보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 하므로 전일에 이것을 아뢰었다’고 하면서,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역시 한림(翰林) 한 사람에게 항상 사록을 겸하도록 한 것이 아마 이 때문인 것 같다”(『中宗實錄』 中宗 十五年 三月 甲寅條)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러한 내용(‘祖宗朝’는 당대가 아니라 ‘선조’나 ‘조상’을 지칭)으로 보아 조보 발행은 중종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차배근은 이 구절과 ‘사록(司錄) 관직이 의정부에 설치된 시기’인

태종 14년(1414년)에 주목하면서, ‘조상시대 즉, 조선 초기(15세기경)에 이미 조보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상 피력하였다(1980, 70쪽). 이 견해에 대해 박정규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비판하였다(1982, 38쪽).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보 유사용어가 가장 일찍 보이는 문건은 1432년(세종 14년) 7월 20일부 황희(당시 영의정)의 서간이다. 이 편지에 “... 지금 남쪽에서 돌아와 막 안부를 물으려고 하던 차에 저보(邸報) 가운데서 춘주(고을원)로 임명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신 할아버지께서 소임을 맡아보았던 읍입니다”(『朝鮮史料集眞』續第二卷 黃喜書簡, “... 今自南還方擬書候, 邸報中承拜春州, 此乃祖父所任之邑”)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리철화, 1995, 395쪽; 차배근, 1980, 70쪽; 박정규, 1982, 41쪽).

다음으로 보이는 문건은 1536년(중종 31년) 심언광(1487~1540)이 쓴 『희경루기』(喜慶樓記)이다. 이 기(記)에 따르면, “문종 원년(1451년) 신미(辛未)에 태수 안철석이 오랜 세월 무너진 채 있던 옛터에 가서 새로 짓고 희경(喜慶)이라 명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세종 20년(1430년) ...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되었는데, 20년이 지난 이 때에 이르러 옛 이름을 회복하여 광주목(光州牧)이 되어 누각이 만들어지고 조보도 이르니 마을사람들이 서로 기뻐하였다”(『漁村集』卷九, 喜慶樓記, “我文宗元年辛未, ... 積二十餘年, 至是復舊號爲光州牧, 樓成而朝報至, 邑人感喜相慶”)는 것이다. 늦어도 문종 원년에는 조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김경래, 2007, 211쪽).

한편, 박정규는 “성종대에 조보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헌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서도 『성종실록』에 많이 등장하는 비목(批目)이 “조보의 맹아적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1982, 46쪽).

비목(批目)은 ‘이조나 병조에서 사람을 천거하면 이들에 대해 임금이 재가(裁可)와 의견을 일일이 달아서 정부에 내려 주던 글장’인데, 이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조(1건)를 시작으로 세종 5건, 세조 2건, 성종 19건, 연산조 5건, 중종 5건, 명종 2건 도합 39건이 보이며, 『승정원일기』(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건들과 의례적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조선시대 최대의 일차사료. 임란을 비롯하여 이괄의 난, 승정원의 화재 등으로 인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사료가 남아 있음)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 인조대 이후 비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목이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오는 시기는 태종 12년 10월인데, 그것은 ‘비목처리법’(下批法)을 개정한다(『太宗實錄』太宗十二年十月丙子條)는 내용이다. 이때 개정된 하비법(下批法)은 “비목(批目)을 의정부로 내리면 솜이 이하가 정청(政廳)으로 맞아들인 후 전사(傳寫)하여 당상관의 사제(私第)로 가져가 보이고, 솜이 비목을 정결한 곳의 안상(案上)에 둔다”고 하였다.

성종조에 나오는 비목 용례 19건 가운데 11건(58%)이 ‘언론삼사(言論三司)에서 인사조치문건인 비목을 보고서 인사 처리의 부당성을 상소하는 내용’(『成宗實錄』成宗四年二月己巳條, 四年二月癸未條, 四年六月己丑條 등)들이다. 이것은 비목의 내용이 전달 및 필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정부 당상관 이외에도 ‘언론삼사가 반드시 열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목과 조보와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조보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때부터 비목이라는 용어가 점차 사라진 것을 보면 비목이 ‘조보의 인사관련 소식’으로 편입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중종은 조보 운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조보의 역할을 ‘언론양사에게 단지 알게 하는 것’(『中宗實錄』中宗十年五月戊子條, “凡朝報, 但使兩司知之”)이라고 인식하였다. 군주가 인사처리한 문건인 비목은 의정부의 사인(畵人)이 문서형태로 필사·보관하며 의정부의 당상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삼사가 이 문건을 공개적으로 열람하였다는 점에서 ‘조보의 맹아적 형태일 가능성’을 제기한 박정규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중화는 그의 논문(1918)에서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에 나오는 “又曰嘗入實錄廳 見時政記 其異於朝報者 …”(필자주: 또 말하기를, “일찍이 실록청에 들어가 시정기를 보니 그것이 조보의 내용과 달라서…”)를 인용하면서, 퇴계가 실록청의 당상관으로 임명된 1568년(선조 원년) 이전인 16세기 중반을 조보의 기원으로 삼았다. 조보는 조선왕조실록에 1508년(중종 3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어, 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와 더불어 모리스 꾸랑(『朝鮮書誌』, 1894)과 성준덕(1955)은 조보의 기원

을 선조대로 잡고 있다(차배근, 1980, 69쪽). 이들은 “비록 전근대사회라 할지라도 인쇄형태로 발행되어야 최소한도 언론매체로 간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조보의 기원 문제를 논함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필사조보를 제외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조선시대 중종조 이전의 역사적 사료 가운데 ‘조선 개국 초기에 조보의 출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은 ① 황희의 서간 ② 심언광의 『희경루기』 ③ 『태종실록』 태종 13년 12월 신유조에 실려 있는 ‘분발’(分發; 分撥) 기사 등 3건이다. 이들을 통해 조보 출현 가능성을 태종·세종·문종 연간으로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건들 이외에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 차원에서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연산군일기』)이나 사대부들의 개인 문집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보출현 연대를 조선개국 초기로 소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2) 조보의 명칭 문제

남북한의 언론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조보(朝報)라는 공식명칭 이외에도 저보(邸報)를 비롯하여 기별(奇別), 조지(朝紙), 저지(邸紙), 저장(邸狀), 기별지(奇別紙), 난보(爛報), 경보(京報), 경기(京奇), 소식(消息), 한경보(漢京報) 등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차배근, 1980, 67쪽; 박정규, 1982, 41~42쪽; 리철화, 1995, 393쪽).

한편, 중국은 전근대 신문매체가 한나라를 거쳐 당송명청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발행되었는데, 조보가 체계적으로 발행되었던 중종대는 중국의 명대에 해당한다. 이때 ‘관속적 칭호’는 저보(邸報)였으며, 이외에도 조보(朝報), 보장(報狀), 궁문초(宮門鈔), 저초(邸抄), 초보(鈔報), 각초(閣鈔), 제목(除目), 과초(科鈔) 등으로 불렸다. 중국의 전근대 신문들은 전술한 명칭과 함께 경보(京報), 당보(塘報; 堂報; 堤塘報), 난보(爛報), 잡보(雜報), 조보(條報), 저장(邸狀), 진주원보(進奏院報), 진주관보(進奏官報), 진주보(進奏報)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方漢奇, 1992, 206쪽; 方漢奇·張之華, 1996, 23쪽; 袁軍 外, 1998, 13쪽; 차배근, 1984,

64~68쪽; 천관우, 1963, 439쪽).

전근대신문의 다양한 명칭 가운데 중국과 조선의 공동 명칭은 조보, 저보, 난보, 경보 등이며, ‘기별’과 ‘조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신문에 고정된 제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 발행·편집 기관의 다양한 호칭(예컨대, 京邸·內閣·六科·承政院·進奏院·堤塘報房 등) 때문이기도 하였다.

차배근은 조보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설명하기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 고유어인 기별지(奇別紙; 奇別)이며, 다음은 한문식 표현인 조보와 저보이고, 나머지를 예컨대, 조지·저지·저장·난보·한경보 등은 드물게 사용되었다. 저장·저지와 같은 명칭은 통용어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임의로 부른 듯하며 한경보는 모리스 꾸랑이 지은 『조선서지(朝鮮書誌)』(1894년)에서만 발견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980, 67쪽). 한편, 박정규는 “조선시대 필사신문의 공식명칭은 조보”라 규정짓고, 이외에도 “저보를 비롯하여 기별, 조지, 저지, 저장, 기별지, 난보, 경보, 경기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하였다(1982, 41~42쪽).

조보의 다양한 명칭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승정원이 조정의 소식을 기별청을 통해 매일 출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보(朝報)는 ‘중국 송대 관보의 공식호칭이자 조선조의 공식명칭’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보라는 용어는 중종 3년(1508년) 1건을 시작으로, 중종 10년(1515년) 1건, 중종 15년(1520년) 1건, 중종 16년(1521년) 1건, 중종 18년(1523년) 4건, 중종 19년(1524년) 1건, 중종 20년(1525년) 1건, 중종 23년(1528년) 1건, 중종 24년(1529년) 1건, 중종 25년(1530년) 1건, 중종 33년(1538년) 1건, 중종 37년(1542년) 1건 등으로 『중종실록』에만 15건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명종 6건, 선조 71건, 광해조(중초본·정초본 포함) 216건, 인조 36건, 효종 9건, 현종 8건, 숙종 17건, 경종 4건, 영조 36건, 정조 14건, 순조 1건, 고종 9건 등(총 442건)이 나와 중종조부터 고종조까지 44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조지(朝紙)이다. 숙종조 9건을 시작으로, 경종

<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기별 ‘조보’ 유사용어 사용빈도

조보 유사용어	태종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王代 누적빈도
朝報		15		6	71	216	36	9	8	17	4	36	14	1			9	442	13
朝紙										9	3	34	82	9		3	32	172	7
邸報				2	8	12	8	6	9	8		7	1	2				63	10
奇別		33		1	2	2	1					1					1	41	7
爛報												3	8	1				12	3
京報					4	2				1								7	3
京奇		1										1						2	2
分撥	1					14	2	1										18	4

3건, 영조 34건, 정조 82건, 순조 9건, 철종 3건, 고종 32건(총 172건)이 나온다. 영정조 때 주로 조보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었는데, 영조 때는 조보와 조지를 비슷한 빈도로 함께 사용하다가 정조조와 고종조에 이르러 조지를 집중적으로 사용, 조보보다 오히려 사용건수가 더 많았다.

‘지방장관들이 해당지방의 서울사무소인 경저(京邸)로부터 전달받은 신문’인 저보(邸報)는 조보와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용어는 명종조 2건을 필두로 선조 8건, 광해조(중초본·정초본 포함) 12건, 인조 8건, 효종 6건, 현종 9건, 숙종 8건, 영조 7건, 정조 1건, 순조 2건 등 도합 63건이 나왔다. 명종대부터 순조대까지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저보와 관련 있는 ‘저장’(邸狀)(『宋子大全』卷八十九 書, 1건)과 ‘저지’(邸紙)(『承政院日記』高宗十六年八月丙寅條; 『宋子大全』卷三十一 書, 각 1건)라는 용어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보의 고유한 우리말 별칭인 기별(奇別)이라는 용어는 조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종 33건을 비롯하여 명종 1건, 선조 2건, 광해조 2건, 인조 1건, 영조 1건, 고종 1건 등 도합 41건이 나타나, 중종조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기별지(奇別紙)라는 용어 역시 생각과는 달리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다.

난보(爛報)라는 용어는 영조 3건, 정조 8건, 순조 1건 등 모두 12건이 나타나 영정조 때 주로 사용한 용어이다. 경보(京報)라는 용어는 선조 4건을 필두로 광해조 2건, 경종 1건 등 도합 7건이 사용되었으며, 선조대에 사용된 경보는 대체로 중국 조보를 지칭하였으며, 한경보(漢京報)〔『知退堂集』 卷之四 碑誌, 1건〕라는 용어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기별’의 뜻으로 지역명칭이라 볼 수 있는 경기(京奇)는 중종 1건, 영조 1건 도합 2건이 보여 자주 사용한 용어는 아니었으며, ‘지방감영에서 발행하는 지방소식지’인 영기(營奇)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 사학자 리철화(1995, 393쪽)가 주장하는 소식(消息)이라는 용어는 조선 초기에 주로 나오는 용어지만, 조보의 별칭으로 쓰인 경우는 없다. 주로 ‘임금이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승지가 왕지를 받들어서 보내는 글’인 「내전소식」(內傳消息) — 고려조의 「선전소식」과 동일 — 과 ‘지방관청에서 임금에게 조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던 문서’인 「소식」(消息)〔『太宗實錄』 太宗十二年十二月 己巳條, 태종조 「啓目」으로 고참〕 등 2가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국에서 즐겨 사용했던 보장(報狀)은 태종조 1건을 비롯하여 세종 1건, 세조 1건, 연산조 1건, 중종 3건을 비롯하여 고종조(2건)까지 도합 69건이 보이고 있으나 ‘조보의 별칭’이 아닌 ‘지방관청이나 중앙의 아문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문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정의 모든 일을 각사(各司)의 하인[胥史]들이 소지(小紙)에 써서 관원에게 보내는 호외 형식’인 분발(分發)〔『孝宗實錄』 孝宗元年六月 乙酉條, “朝家凡事, 各司下人書於小紙, 送於官員, 謂之分發”〕은 태종 13년(1413년) 1건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선조대까지 뜸하다가 광해조〔『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군 4년(1612년) 2건, 광해군 7년(1615년) 1건, 광해군 10년(1618년) 5건, 광해군 11년(1619년) 1건; 『광해군일기』(정초본) 5건〕에 이르러 14건이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조 2건 효종 1건 등 도합 18건이 나타나고 있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보이는 용어는 조보(442건)이며, 다음으로 조지(172건), 저보(63건), 기별(41건), 난보(12건), 경보(7건)의 순이었다. 나머지 용어(기별지, 저장, 저지, 한경보, 영기 등)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보(13왕대)와 저보(10왕대)는 여러 왕대에 걸쳐 두루 사용된 용어이며, 기별(7왕대)은 조선조 중반기(중종대-인조대)에 주로 사용된 용어라면, 조지(7왕대)는 조선조 후반기(숙종대-고종대)에 주로 사용된 용어였다. 반면, 난보(3왕대), 경보(3왕대), 경기(2왕대) 등은 그렇게 두루 사용한 용어는 아니었다. 한편으로 선조조를 비롯하여 광해조, 인조조, 영정조대에는 조보 유사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칭사용의 특징은 『승정원일기』의 분석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조보는 인조에서 고종까지 무려 19,465회나 사용되어 공식적 명칭임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며, 다음으로 조지(867건), 저보(237건), 기별(78건)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고, 난보(33건), 저지(22건), 경보(14건), 한경보(0건) 등은 자주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다. 조지는 조선조 후반기(숙종조-고종조) 특히, 영정조 때 9할 이상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난보 역시 97%가 영정조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조보의 호외형식인 분발(64건)은 비교적 많이 사용된 반면 경기(5건), 영기(0건)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고종조(1864~1907) 44년 동안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보명칭 빈도를 살펴보면, 조지(73건)를 필두로 조보(71건), 기별(50건), 저보(14건), 경보(9건), 난보(1건), 저지(1건)의 순이었으며, 기별은 ‘조보의 별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별서리, 기별군사, 기별서사(奇別書寫) 등의 단어로만 사용하였다. 즉, 당시의 일상적 용어는 조보와 조지이며, 저보와 경보도 가끔 함께 사용하였다.

3) 조보의 폐간시기 문제

조선시대의 조보는 언제 폐간되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설(異說)이 있는데, ① 1883년 폐간설, ② 1894년 폐간설, ③ 1905년 폐간설 등 3가지다. 첫 번째 설은 1883년 10월 박문국에서 『한성순보』를 인쇄로 발행하자 조보가 폐지되었다는 입장이다. 이 설은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관보인 『한성순보』 발간 이후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조보관련 기사가 매우 많이 보여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 설은 주로 북한 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다(『력사사전』(1), 1971, 233쪽; 리철화, 1995, 395쪽).

두 번째 설은 1894년 6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대폭 개편되자 승정원이 승선원으로 바뀌고 그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으며, 새로 생긴 관보국이 인쇄관보를 본격적으로 발행하면서 필사조보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최준이 1960년 처음 제기한 이후에 많은 언론사 연구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최준, 1960, 2쪽; 차배근, 1980, 73쪽; 박정규, 1982, 13쪽; 리응필, 1985, 28쪽; 정진석, 1990, 27쪽; 최정태, 1994, 47쪽).

세 번째 설은 1905년 11월 한일간 ‘을사5조약’이 체결되고 이로 인해 1906년 2월 대한제국의 실질적 통치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자 필사조보가 폐지되었다는 입장이다. 이 설은 유일하게 정진석이 주장하였다(정진석, 1997, 114쪽). 그런데, 정진석은 1990년에 발행한 『한국언론사』에서는 두 번째 설을 주장한 바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 이후 조보 관련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1904년(고종 41년) 7월 15일자 『고종실록』에 단지 1건만이 보인다. 그곳에는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안종덕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내용이 실려 있는데, “(중략) 요즘의 조지(朝紙)를 보니, 칙임관·주임관·판임관의 벼슬이 매번 가까이 들면서 사적인 총애를 받거나 점쟁이나 이단(異端)의 무리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高宗實錄』 高宗 四十一年 七月 十五日條, “...竊觀近日朝紙, 勅奏, 判任官之除. 每下於近習私昵, 卜祝左道之流者, 何也?”; 『承政院日記』 高宗 四十一年 六月 庚戌條)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보(유사물 포함)를 초록·발취·정서한 문건(報取, 爛選, 爛抄, 爛草, 爛錄, 爛報, 爛餘, 爛彙 등으로 불림)들이 규장각을 필두로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대학(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도서관 등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최정태, 1994, 27~33쪽).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조보정리문건들 가운데 1894년 이후에 나온 조보를 정리한 문건이 두 건 있다. 하나는 고종 31년(1894년) 6월부터 고종 32년(1895년) 9월까지 집록한 난초(爛草; 6冊, 편자미상, 1895년경 필사추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광무 9년(1905년) 1월 5일부터 광무 10년(1906년) 4월 20일까지

집록한 난보초록(爛報抄錄; 2冊, 편자미상, 1906년경 필사추정)이다(최정태, 1994, 28~33쪽).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승정원일기』에는 1905년 이후 ‘조보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사’가 2건 있다. 하나는 1906년 6월 22일자(양력) 기사(侍從院副卿 이용식의 사직소)에 “삼가 아뢰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이달 22일 ‘조지’에 조서를 특별히 내리시어 신에게 시종원 부경의 직함을 제수하시니, 의분(義分)으로 헤아려볼 때 너무도 황송합니다”(『承政院日記』 高宗 四十三年 五月 丁酉條)라고 기술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1907년 2월 5일자(양력) 기사(태의원 도제조 조병호의 약원 직함 해면과 서훈 취소를 주청하는 차자)에, “삼가 아뢰입니다. … 신이 일전에 조지를 얻어 보니 훈1등(勳一等)에 서훈하는 명이 뜻밖에 갑자기 내려졌습니다. 신은 당황스럽고 놀랍고 의혹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承政院日記』 高宗 四十三年 十二月 乙酉條)라는 내용이 있어, 적어도 1907년 2월까지 조보가 계속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사조보가 정확하게 언제 사라진 것일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료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승정원의 역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의정부·육조·삼사와 함께 조선의 중추적 정치기구인 승정원(承政院, 政院, 喉院, 銀臺, 代言司)은 1400년(정종 2년) 4월 중추원의 군무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면서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따로 설치되었다.

승정원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궁내부 산하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었다. 1895년 4월 시종원(侍從院)의 비서감(秘書監)이 되었다가 11월 독립하여 비서원(秘書院)으로 개편되었으며, 1905년(광무 9년) 비서감으로 복귀했다. 1907년(융희 1년) 7월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하고 11월에 이르러 궁내부(宮內府)의 관제개편으로 승정원 역할을 수행하던 비서감(秘書監)을 폐지하였다. 이때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 황실의 서적, 문건, 기록, 어장(御章), 어진(御眞), 황실족보[璿源譜牒] 등의 사무를 규장각(奎章閣)이 관장하고 있었지만(『純宗實錄』 純宗 卽位年 十一月 二十七日條), 『순종실

록』을 비롯하여 당시의 관련 사료들에 조보 유사용어가 나오지 않아 필사조보의 발행은 멈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왜 조보는 정부 발행의 인쇄관보와 민간일간신문이 다양하게 발행되던 조건에서 필사 형식으로 오랫동안 존속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갑오개혁 이후 자주 행해졌던 관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왕명출납을 맡아보던 기관이 명칭을 달리하여 1907년 11월까지 존속했으며, 이 기관에서 매일 매일 주요정보들을 경향 각지에 전달하였던 필사조보는 중앙의 관청·관리·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관보나 민간신문보다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 정보의 풍부성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기문기사의 성격 문제

조보에는 일상적인 날씨를 비롯하여 천문, 기상상태, 천재지변에 대한 내용 등이 실려 있다.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회적·자연적 돌발사건인 ‘기문기사’(奇聞奇事)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최준은 광해조에 일어난 3가지 특이한 사건(① 4개의 발과 날개가 달린 병아리 탄생사건, ② 색깔이 독특한 달의 출현사건, ③ 계란만한 우박이 나는 새를 죽이고 사람이 놀라 죽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사회면 가십기사’로 간주하였다(1960, 2쪽). 조보가 임금의 명령과 묘당의 처결사항뿐만 아니라 자연적 이변[災異]도 비교적 많이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단순한 관보가 아니라 ‘근대적 신문에 가깝게 접근하였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러한 시각은 조보가 ‘관보로서의 기능’과 함께 ‘일반신문으로서의 뉴스 보도기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차배근, 1980, 91쪽). 기문기사(奇聞奇事)에 대한 최준의 시각은 일반적 통설이 되어, 언론사 후속논문 및 개론서, 사전류에 그대로 인용·전제되었다(이진섭, 1968, 25쪽; 차배근, 1980, 90쪽; 이홍식, 1982, 1403쪽; 박정규, 1982, 173쪽).

조보에 실린 기문기사, 즉 재이기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차배근은 재이기사가 “백성들에게 숙명론적 사상을 심어주며, 지배층의 가혹한 통치의

인과응보 또는 백성들이 인륜을 배반한 결과로 암시하면서, 결국 백성들 스스로 반성케 하고 나아가 봉건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1980, 91쪽). 김경래는 “인간이 무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007, 219쪽).

‘자연재해’ 또는 ‘범상하지 않은 자연현상’으로 풀이되는 재이(災異)는 인간사(人間事)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 특히 유교사상가들은 인간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상가는 음양가와 유교적 정치철학을 연결시킨 전한 무제 때의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9~104)이다. “하늘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는 까닭에,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을 주창한 그는, “통치자의 그릇된 행위가 하늘을 노하게 하면 하늘의 진노는 자연적이변(예컨대, 지진, 일식, 월식, 한발, 홍수, 적조, 병충해 등)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음양의 원리를 근거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동중서의 천인감응 사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이(災異)란 천지만물에 있어 범상하지 않은 변화[不常之變]를 뜻한다. 그 가운데 작은 것을 재변[災]이라 하는데, 이것이 먼저 일어난 후에 이변[異]이 잇따라 일어난다. 재변은 하늘의 꾸짖음[天之譴]이며, 이변은 하늘의 위협[天之威]이다. 꾸짖는데도 재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괴이한 이변을 보여 놀라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구함을 알지 못하면 그 위태로움과 재앙은 극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하늘이 군주를 사랑하는 뜻을 보이면 군주 자신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春秋繁露』 必仁且智).

이와 같은 동중서의 천인감응사상은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까닭에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대 사서에 재이기사가 ‘군주의 실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꾸짖는 중요정치기사’의 일환으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재이(災異) 용어는 태조조부터 고종조까지 줄기차게 나와 무려 1,492회를 기록하고 있다. 정종 2년(1400년) 12월 22일에 재이가 일어나자 군주는 다음과 같이 구언교지를 내렸다.

대개 들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더불어 통달하여 사이가 없으므로, 정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꾸지람이 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재이(災異)의 일어남이 실상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하늘의 견고(謹告)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 내가 부덕한 사람으로서 큰 통서(統緒)를 이어받아 밤낮으로 진념(軫念)하여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약하나, 사방이 넓고 만무(萬務)가 번다하므로, 어떻게 두루 알아서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근자에 우리와 비가 적당한 시기를 잃고, 성문(星文)이 일개움을 보였으며, 또 이달 22일에는 수창궁(壽昌宮)에 화재가 났었다. 허물이 여기에 이르니, 통렬히 스스로 책망한다. (중략) 이것들이 모두 위로 화기를 범하여 재이(災異)를 부른 까닭이다. 재앙을 없애는 도를 닦고자 하면 마땅히 곧은 말을 구하여야 하겠다. 무릇 과인의 잘못과 죄우의 충성하고 간사한 것과 정령(政令)의 잘되고 못된 것과 민생의 이해(利害)와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극진히 말하여 숨기지 말라. 말이 채용할 만하면 내가 상을 주겠고, 말이 혹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겠다. 아! 너희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한량(閑良)·기로(耆老)는 각각 소견대로 실봉(實封)하여 조목조목 올리고, 마음을 합하여 서로 경계해서 그 직책을 힘써 닦아, 나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와서,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뜻에 부응(副應)토록 하라(『定宗實錄』 定宗 二年 十二月 壬子條).

이 재이 관련 기사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이를 군주의 정치특실과 연결시킴으로써 경향 각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는 구언교지를 내리고 재능이 있는 자를 천거케 하는 한편,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가지수를 줄이며[減膳], 음악을 철폐하고[徹懸], 허물을 자책하며, 부역(徭役)을 정지하고, 세금 거두는 것을 적게 하며 인심을 위로하는 것이

군주의 일반적 도리였다(『定宗實錄』 定宗 二年 六月 乙未條; 『太宗實錄』 太宗 元年 七月 庚戌條; 『太宗實錄』 太宗 元年 十一月 庚子條).

따라서, 조선시대 조보에 비교적 많이 나오는 기문기사는 거의 자연적 이변[災異]에 관한 기사로서 ‘사회면 가십기사’가 아니라 군주의 정책실패와 허물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주요정치기사’에 해당한다. 차배근(서울대 명예교수)은 2008년 4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8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공동 봄철학술대회>에서 조보에 자주 언급된 기문기사의 성격을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중요정치기사’로 정정하였다.

5) 민간인쇄조보의 문제

(1) 발행 간격 및 세계 신문사적 위치

박정규는 그의 박사학위논문(1982, 113~114쪽)에서 민간인쇄조보의 신문사적 의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선조 때의 인쇄조보는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술에 의한 일간신문의 영예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인쇄조보(1577년)가 중국(1638년)과 서양(1650년)보다 적어도 60~70여 년 앞서 활판인쇄로 일간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김영주, 1999, 277쪽).

그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당시의 관보인 필사조보가 매일 출방되었는데, 그것을 영리적으로 인쇄하여 판매할 때 당연히 일간으로 발행하지 않고서는 사대부 독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1982, 113~114쪽)이라 하였다. 이처럼 민간인쇄조보는 매일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관련사료(『宣祖實錄』 宣祖 十年 十一月 庚辰條; 『宣祖實錄』 宣祖 十一年 正月 丁卯條; 『宣祖修正實錄』 宣祖 十一年 二月 壬午條; 『石潭日記』 萬曆六年 戊寅條)들을 살펴보면, 민간인쇄조보를 매일 발행하였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주장처럼 민간인쇄조보가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일간신문’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이 조보가 매일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박정규의 이러한 주장은 1960년에 발행된 최준의 저서 『한국신문사』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최준은 각주(脚註)를 통해 이이(李瑋)가 쓴 『석담일기』를 인용하면서 민간인쇄조보가 ‘인쇄로 날마다 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료에는 민간인쇄조보가 일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최준은 『석담일기』의 내용 가운데 ‘上偶見之, 震怒曰刊行朝報, 與私設史局何異’[번역: 임금이 우연히 그것(필자주: 조보)을 보고 격노하여 말하기를, 조보의 간행은 사국(필자주: 역사를 맡은 관청)을 사사로이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上偶見之, 震怒曰刊行朝報, 與私設史局何異’(번역: 임금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 격노하면서 매일 조보를 간행한다는 것은 사국을 사사로이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1983, 3쪽). 이와 함께, 정진석도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10년 1월 1일자를 인용하면서 민간조보가 매일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990, 27쪽), 논문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1577년 8월 발행된 『민간인쇄조보』와 비슷한 시기인 1580년(萬曆 8년) 4월 22일자로 북경에서 발행된 『급선보(急選報)』(제호)라는 명대 신문이 현재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인쇄본인 『급선보』는 저보(邸報)의 일종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조악하게 인쇄되었으며, 유통에 편리하도록 소책자 형태(길이 24.6cm, 폭 14.4cm)로 제본되었다. 지질이 나쁜 마분지로 표지(表紙)를 별도로 한 6쪽짜리 인쇄신문은, 제당보방(堤塘報房; 조정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보방(民間報房)에서 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방한기·장지화, 1996, 28~29쪽; 김영주, 1999, 284쪽).

명나라 저보(邸報)를 본 떠 만든 청나라 경보(京報)는 대체로 길이 20~22cm, 폭 9~10cm의 크기로 본문이 5~10쪽이며, 각 면의 행수는 8행으로 1행은 대략 23자(字)로 된 소책자형태의 민간신문이었다(戈公振, 1982, 49쪽; 曾虛白, 1984, 95쪽). 선조 10년 중국 조보를 모방해 만들었다는 조선의 민간인쇄조보 역시 크기 및 면수가 중국 인쇄조보나 경보(京報)와 비슷한 형태(길이 20~25cm, 폭 10~15cm, 면수 5~10쪽)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573년과 1580년에 주조된 금속활자[甲寅字]는 가로세로 크기가 1.4cm×1.4cm인 데 비해 1599년에 새긴 목활자[訓練都監字]는 1.5cm×1.7cm이고, 1603년과 1606년 사이에 새긴 목활자[實錄字]는 1.4cm×1.6cm로서 목활자가 금속활자보다 조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보기, 1970, 1045~1056쪽). 따라서, 목활자본인 조선의 민간인쇄조보는 목판본인 중국의 『금선보』와 금속활자본인 『경보』(京報)의 중간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쇄조보의 일간신문 가능성은 조보발행 관련인원을 개화기 때 발행된 일간신문사의 인원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인쇄조보 발행사건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은 자는 조보발행 허가를 내준 정부 관료들을 제외하고 30여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서 조보의 판매와 배달 등 단순업무에 관여한 인원들을 제외하고, 조보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數名으로 나옴)를 비롯하여 취재·편집·인쇄에 관여한 자를 모두 합치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것이다. 한편, 한말에 발행된 일간신문사들의 인원은 7명부터 수십 명에 이른다. 예컨대, 1908년 현재 황성신문사 9명, 제국신문사 9명, 대한매일신보사 16명, 국민신문사 7명, 한성신보사 35명(기자 8명)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석, 1995, 79~113쪽; 채백, 1999, 369~370쪽).

종종대에서 선조대에 이르는 동안 민간인들이 조보를 인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성숙되었다. 1519년(중종 14년) 7월에 중국을 모방하여 서울에 서책을 팔고 살 수 있는 서점[書肆]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소격서 및 폐사된 절의 유구나 종 등으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출하도록 하였다(『東閣雜記』上, 本朝璿寶錄). 또한, 서울의 수표교 근처에 전문적 서책상인이 출현하였으며(어숙권, 『放事撮要』), 경저·서원·사가(私家) 등에서 목활자로 여러 종류의 서책을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박정규, 1980, 116쪽).

당시의 민간조보 인쇄업자들은 승정원에서 매일 출방되는 필사조보를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취재·편집과정에서 소모되는 인적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아래, 6쪽짜리 정도의 인쇄조보를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김영주, 1999, 288쪽).

선조 때 민간인쇄조보 발행자들이 “중국 조정에서 인쇄·발행되는 조보를 모방하여 그렇게 하였다”(『宣祖實錄』 宣祖十一年 正月 丁卯條, “倣中朝印出朝報而爲之”)는 기사내용과 “중국 조정에서 유통되는 소식들이 모두 인쇄된다는 말을 듣고서, 인쇄·발행된 조보를 모방하려고 하였다(『宣祖修正實錄』 宣祖十一年 二月 壬午條, “聞中朝通報皆印行, 欲倣倣印出朝報”)는 기사내용을 보면, 명나라 조보가 조선의 민간조보보다 앞서 인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1598년 선조에게 올린 정탁(1526~1605)의 차자에 따르면, “중국 조보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매일 인쇄되고 있다”(鄭琢, 『藥圃集』 卷三十九, 「晴勿禁朝報節」, “中朝通報, 本無所諱, 逐日刊印 …”)는 사실을 당시의 사대부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진석은 “우리나라 민간인쇄조보가 세계 최초로 인쇄된 신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1997, 112쪽).

중국의 송대에는 정부관보인 조보를 목판(鑿板)으로 인쇄하였다는 사료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朱傳譽, 1967, 38~39쪽; 차배근, 1984a, 82~83쪽). 예컨대, 고종(高宗) 소흥(紹興) 2년(1133년)과 3년(1134년), 인종(仁宗) 천성(天聖) 2년(1024년)과 경력(慶曆) 6년(1046년) 등의 기사들(『宋會要輯稿職官』 二之四八; 『續資治通鑑』 卷三六; 『續資治通鑑』 卷四八)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중국의 언론학자인 과공진(1982, 43~44쪽)은 그의 저서 『중국보학사』(초판 1926년)에 고염무(顧炎武; 明代와 清代 사이)(1613~1682)에 태어난 저명한 고증학자로서, 당시 중국 조보의 인쇄 여부를 직접 확인해줄 수 있었던 동시대 인가 지은 『정림문집(亭林文集)』의 일부 내용을 실었다. 그 내용은, “… 憶昔時邸報, 至崇禎十一年方有活板, 自此以前, 並是寫本”[번역: … 지난날의 저보를 돌이켜 보면 송정 11년(1638년)에 이르러 비로소 활판이 존재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모두 필사본이었다]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문집의 내용을 대만 및 중국의 많은 언론사학자들 예컨대, 증허백(1984, 89쪽)을 비롯하여 퇴광림(1987, 17쪽), 양가록 외(1987, 21쪽), 방한기(1992, 137쪽), 서배정 외(1994, 69쪽) 등은 하나같이 인용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염무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송대 목판인쇄조보 존재)과 상호 모순된다. 중국 조보의 인쇄문화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필사로 발행하다가

송대에 이르러 목판 인쇄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명대 송정(崇禎) 11년(1638년)에 이르러 활판인쇄로 발행하였다”(차배근, 1984, 90쪽). 명나라 인쇄 문화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만력(萬曆; 1573~1620)에서 천계(天啓; 1621~1627)에 이르는 동안 변함없이 필사와 목판인쇄의 2가지 방법이 병존하였으며, 송정(崇禎) 11년(1638년)에 겨우 활판인쇄를 시작하였고 송정(崇禎) 말년에 이르면 활판인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1638년 이후에도 명대 저보(邸報)의 인쇄방법은 여전히 활판인쇄와 필사 방법을 병존하고 있었다. 1638년에 나온 활판인쇄저보는 제당보방(堤塘報房)이 아닌 민간보방(民間報房)에서 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方漢奇·張之華, 1996, 24~27쪽).

위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의 동시대인들이 선조 10년(1577년)에 보았다는 명대의 신문은 필사본과 활판인쇄본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판인쇄본’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577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발행되었던 조선시대의 민간인쇄조보는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일간신문’일 가능성이 크며, 같은 시기에 발행되었던 명나라의 인쇄조보는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 일간신문’으로 여겨진다(김영주, 1999, 287쪽).

김경수는 민간인쇄조보의 활자가 목활자인지 금속활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1999, 742쪽), ‘鑄字印朝報’(활자를 주조해서 조보를 발행하다)라 하지 않고, ‘刻活字印朝報’(활자를 깎아 조보를 발행하다)(『宣祖修正實錄』 宣祖十一年 二月 壬午條; 『石潭日記』 萬曆六年 戊寅條)라는 구절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금속활자가 아니라 목활자로 인쇄된 것이다.

(2) 발행주체의 계층

성준덕은 민간조보 발행자를 “당시 인텔리들로서 사환(史宦)의 등용문[科擧]에 떨어진 백두(白頭)”라 하였다(1955, 1쪽). 여기서 ‘백두’란 지체는 높으나 벼슬하지 않은 양반을 일컫는다. 관련 사료들에 따르면, 민간인쇄조보를 발행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글자를 알면서 일없이 놀고먹는 자들’(『宣祖修正實錄』 宣祖十一年 二月 壬午條, “京中識字游食之人”), ‘서울에서 일없이 노는 자들’(『石潭日記』 萬曆六年 戊寅條, “京中游手之輩”); 『練藜室記述』 別集, 政教典故(禁令),

“京中肉食之人”)로 기술하고 있다. 30여 명의 민간조보발행사건 치죄자들 가운데 신문의 발행·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성격상 식자층(識字層)이었을 것이며, 민간조보의 배달·판매·인쇄를 담당한 사람들은 식자층이 아니어도 무방했을 것이다(김영주, 1999, 287쪽).

박정규는 ‘서울에 사는 유식한 민간인 수명(數名)’이 연서(連書)로 의정부와 사헌부에 관련서류를 올려 조보발행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관리가 못된 양반 또는 사대부계층에서 몰락한 사람이거나 중인계급(中人階級)으로 서책(書冊)을 제작·판매하는 상인 또는 서책상인의 활동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였다(1978, 129~130쪽; 1982, 117쪽). 한편, 정진석(1997, 111쪽)과 최준(1983, 3쪽)은 유수배(游手輩)의 개념을 ‘글공부는 했으되 관직에 나가지 못한 실업자’ 또는 ‘민간 유지’로 규정하여, 상민(常民)계층이 아니라 사대부계층이거나 중인(中人)계급으로 간주하였다.

선조는 민간인쇄조보를 발행한 사람들을 ‘노배’(奴輩, 종놈)로 규정짓고 “이들이 어찌 중국 조정의 소식들이 인쇄·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宣祖實錄』 宣祖 十一年 正月 丁卯條, “中朝通報印出, 豈奴輩所曉”)라고 반문하면서 이들 뒤에는 조보발행을 부추긴 불후세력(아마 사대부계급)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런 까닭에 선조는 주창자들(‘奸黠者’, ‘倡首’, ‘主議之人’ 등으로 호칭)을 철저히 밝혀낼 목적으로 1577년(선조 10년) 11월 28일 알게 된 인쇄조보발행사건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약 45일 동안 관련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를 펼쳤다(『宣祖實錄』 宣祖 十年 十一月 庚辰條; 『宣祖實錄』 宣祖 十一年 正月 丁卯條; 『石潭日記』 卷之下, 萬曆六年 戊寅條).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후세력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민간조보를 발행한 사람들이 상민계층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율곡[李珥]은 인쇄조보 발행자들을 ‘우민’(愚民, 어리석은 백성) 또는 ‘우망지인’(愚妄之人; 어리석고 망령된 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石潭日記』 萬曆六年 戊寅條). ‘노배’(奴輩)를 비롯하여 ‘우민’(愚民), ‘우망지인’(愚妄之人) 등의 표현은 아무래도 사대부계급이나 전문직중에 종사하는 중인계급을 지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김영주, 1999, 289쪽).

민간인쇄조보 발행자들의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기인’(其人)〔『宣祖修正實錄』宣祖 十一年 二月 壬午條, “其人等, 乃刻活字印朝報”; “乃下其人于禁府, 推究倡首, 欲加極刑. 其人等, 累受刑不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학자들과 왕조실록 번역자들은 ‘기인등’(其人等)이라는 단어를 ‘조보를 인행했던 사람들’(朝報印出人等)의 의미인 ‘그 사람들’로 해석하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선조수정실록』(번역자: 이승창)만이 ‘그 사람들’로 번역하지 않고, ‘기인들’(其人等)로 번역한 바 있다.

‘기인’(其人)은 ① (민간조보를 인쇄·발행한) ‘그 사람’ ② 고려시대 초반 이래 지방향리의 자제를 뽑아 중앙관아에 복속시켜 해당지방행정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질로서의 ‘기인’(其人)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통치권이 약했던 고려시대까지 기인(其人)들은 지방세력인 향리(鄕吏)의 자제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양민식자층’(良民識字層)이었으나, 여말·선초의 전환기에 이르러 원래의 임무를 떠나 공실축조 등 잡역(雜役)에 종사하게 되었고 중앙통치력이 강화되던 태종조, 특히 소목법(燒木法)의 개정 이후 주로 ‘소목역(燒木役)에 종사하는 잡역부’가 되었다(『太宗實錄』太宗 九年 四月 丁丑條).

선조 때의 기인(其人)들은 지방행정의 자문자(諮問者)에서 벗어나 각 궁방(宮房)과 관사(官司)에 시탄(柴炭) 공급 전문상인(貢人)으로 전환되는 기로에서 있었다(한우근, 1992, 174쪽). 당시 ‘향리 50명 가운데 1명을 기인(其人)으로 정하는 것이 국법’(有吏五十, 乃定一名, 國之法也)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재감(司宰監)에 소속, 관리되었으며 정원은 모두 233명이었다(『明宗實錄』明宗 十二年 五月 己未條; 『宣祖實錄』宣祖 二十八年 十一月 壬申條).

기인(其人)들은 연산조~선조조 연간에 이르면 공역(貢役)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력이 고갈되었으며 심지어 유랑자로 전락하는 등 그 폐단이 극심하게 드러났다(『燕山君日記』燕山君 元年 五月 庚戌條; 『中宗實錄』中宗 二年 十一月 辛酉條; 『明宗實錄』明宗 九年 四月 丁酉條; 『宣祖實錄』宣祖 二十八年 十一月 壬申條). 그러나, 이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궁방과 관청에 땀감을 공급하는 전문상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인들에 비해 필사조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공개성과 영업성, 독이성(讀易性)을 함께 겨냥한 새로운 정보 전달매체인 ‘민간인쇄조보’와 정보전달의 매개자인 ‘경저리’와 ‘영저리’(외방저리), 다양한 고급정보 욕구에 목말라하는 사대부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상품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서울 소재의 ‘일부 기인’(其人)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영주, 1999, 290~291쪽).

선조 때의 일부 기인들이 조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급정보가 필요했던 중앙의 각 관청이나 사대부 및 외방저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매체인 민간인쇄조보를 발행,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 맺는 말

조보제도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발행기관]의 주서(注書)가 담당 승지의 감독 아래 경향 각지에서 올라온 소식들 가운데 취사선택하여 산하기관인 조보소(朝報所, 奇別廳)에서 매일 출방하면, 각 관청의 기별서리, 경주인, 계수주인 등이 필요한 기사만을 선별적으로 필사하고 해당부처의 기별군사나 경저의 연락책인 경방자(京房子), 역참(驛站) 등을 통해 중앙·지방의 관청이나 사대부들에게 전달하는 뉴스전달제도였다.

원칙적으로 관보인 필사조보(筆寫朝報)는 당시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독자로 하여 공개적으로 발행되는 ‘대중적 보도매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봉건통치계급 내부에 국한하여 폐쇄적으로 발행되는 ‘내부적 통보매체’의 성격을 가졌다(리웅필, 1985, 8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보에는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언론활동(論啓)과 군주의 반응(批答)을 반드시 실어 경향 각지로 전파되는 까닭에, 조야 모두 정치현안의 시비득실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보는 조정의 ‘일방적 통보매체’가 아니라, 독자층인 사대

부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쌍방적 매체’로서 ‘공론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매체’로 기능하게 되었다(김경래, 2007, 235~240쪽).

지금까지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 통보매체인 필사조보는 조선왕조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말경(대략 성종대)에 탄생하여 중종조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봉건 정부가 1894년 8월 인쇄관보(印刷官報)를 발행하면서도 그것과는 별도로 계속 발행하였고 한말의 우수한 민간 일간지들이 나왔던 1907년 11월(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였던 비서감이 폐지됨)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보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조보였다. 다음으로는 조지, 저보, 기별, 난보, 경보의 순이었다. 나머지 용어들(기별지, 저장, 저지, 보장, 한경보, 영기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기별지와 저지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조보와 저보는 여러 왕대에 걸쳐 두루 사용된 용어였다면, 기별은 조선조 중반기(중종대에서 인조대까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지는 조선조 후반기(숙종대에서 고종대까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필사조보는 국가기밀사항(변방 방비에 대한 정부의 지시사항, 임란시 국가기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도 하였다(『中宗實錄』 中宗 二十年 五月 辛酉條; 『中宗實錄』 中宗 二十一年 十一月 丁未條; 『宣祖實錄』 宣祖 二十一年 十一月 丁未條; 『宣祖實錄』 宣祖 三十年 六月 丁卯條).

넷째, 조보에 등장하는 ‘기문기사’(奇聞奇事/ 사회적·자연적 돌발사건)는 현대의 대중신문이 즐겨 취급하는 ‘사회면 가십기사’가 아니라, 유가(儒家)의 천인감응사상에 입각하여 재이(災異)는 군주의 정책 실패나 허물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天譴)을 상징하고 있어 ‘주요정치기사’의 일종이다.

다섯째, 필사조보는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속기체(난초체)로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였다. 1577년(선조 10년) 8월 서울의 민간전문업자(상민층인 其人)들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 목활자로 인쇄, 각 관청·사대부

·외방저리 등에게 판매하였다.

여섯째, 민간인쇄조보는 독이성(인쇄)과 공개성(판매) 때문에 주된 독자층인 사대부들이 환영하였다. 그런데, 민간인쇄조보가 약 3개월가량 발행된 시점(1577년 11월)에 인쇄조보를 보게 된 선조는 “사국(史局)을 사설화(私設化)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간 조치하고 조보발행 관련자 30여명을 유배시키고 언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곱째, 민간인쇄조보 발행사건 이후 조보를 인쇄하지는 주장이 200년이 지난 1776년 5월 정조(正祖)가 한 차례 제기하였으나(『正祖實錄』 正祖 卽位年 五月 乙未條, 1883년 『한성순보』가 출현하기 전까지 인쇄신문은 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이 한국신문사에 끼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덟째, 조선시대 일부 기인(其人)들이 중국 인쇄조보를 본떠 만든 민간인쇄조보(목활자본)는 그 당시 중국의 인쇄신문 형태(길이 20~25cm, 폭 10~15cm, 면수 5~10쪽)와 비슷하였으며, 목판본인 명대 인쇄조보와 금속활판본인 『경보』의 중간크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홉째, 1577년 8월 조선에서 민간인쇄조보가 처음 나오고, 명나라에선 그 이전부터 인쇄조보가 발행되고 있었으며, 1600년경 일본에서 부정기 인쇄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서(김현준, 1928, 372쪽; 이명수, 1987, 3쪽), 1600년경에 이르면 한중일 공히 인쇄신문을 발행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쇄조보는 선조의 탄압정책으로 약 3개월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맞보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하고 활판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문이다.

Ⅰ 참고문헌

1) 참고사료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홈페이지(http://sjw.history.go.kr/intro/intro_05.jsp)
3.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www.itkc.or.kr/MAN/index.jsp>)
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5. 『宣祖實錄(2)』(198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6. 『宣祖修正實錄(2)』(1989). 이승창(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7. 李珣(1971). 『大東野乘』 卷之十五 『石潭日記』. 조규철(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8. 『靑野漫輯』(필사본). 三冊, 四冊 (서울대 규장각 소장 - 민간조보 관련자료).

2) 참고논저

- 김경래 (2007).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한국사론』, 53.
- 김경수 (1999).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집.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병도 (편) (1955). 『대한신문연감 1956』. 서울: 대한신문연감사.
- 김세익 (1982). 『도서 인쇄 도서관사』. 서울: 종로서적.
- 김영주 (1999). 조선조 민간인쇄조보의 몇 가지 쟁점. 『언론학연구』, 제3집, 부경언론학회.
- 김현준 (1928). 동아시아(일본, 중국, 한국)에 있어서의 현대신문의 생성발전. 차배근 외 3인 편저. 『한국신문학사』. 서울: 정음사.
- 『대한매일신보』(한글판)/(국한문판), 1910년 1월 1일자; 1월 6일자(제목: 한국의 신문지; 我國에 朝紙).
- 리응필 (1985). 『조선신문 10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 나남 번각출판.
- 리철화 (1995). 『조선출판문화사: 고대-중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정규 (1978). 조보의 기원에 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15,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_____ (1982).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조보와 그 유사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1977). 『조선문화사: 원시—중세편』(3판). 평양 (1988). 도서출판 오월 번각 출판.
- 성준덕 (1955). 『한국신문사』. 서울: 신문화회.
- 손보기 (1970). 한국인쇄기술사. 『한국문화사대계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 스미스, 앤터니 (1994). 『세계신문의 역사』. 최정호·공용배(공역). 서울: 나남출판.
- _____ (1996). 근대신문의 기원. 『세계언론사』. 채백 편역. 서울: 한나래.
- 심영환 (2008).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서울: 소와당.
- 안재홍 (1927.1.5~9). 조선신문사론. 『조선일보』.
- _____ (1935.7.6~28). 조선신문소사. 『조선일보』.
- 양진석 (2000). 국민대 소장 조보의 특징. 『학예연구』, 창간호, 국민대 박물관.
- 이종수 (1931.12). 조선신문사—사상변천을 중심으로. 『東光』.
- 이중화 (1918.1). 반도의 신문과 잡지. 『半島時論』.
- 이진섭 (1968). 왕조의 언론전사 형태. 『한국의 언론』 간행위원회. 『한국의 언론』(제 1집). 서울: 문화공보부.
- 이흥식 (편). (1982). 『국사대사전』(上/下). 서울: 한국출판사.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_____ (1995). 『인물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_____ (1997.10). 압수당한 항일시와 조보 『신문과 방송』, 제322호.
- 차배근 (1980). 우리나라 조보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한국 신문의 원형으로서의 그 사적 의의. 『신문연구소학보』, 17,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_____ (1984a). 중국 저보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소고—우리나라 조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21,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_____ (1984b). 『중국전근대언론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배근 등 (책임주필)(1993). 『매스컴 대사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차상찬 (1936.11). 조선신문발달사. 『朝光』.
- 채 백 (1999). 황성신문의 경영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3호, 한국언론학회.
- 천관우 (1963). 韓國新聞前史의 몇 가지 문제. 고재욱선생화갑기념논총편집위원회. 『민족과 자유와 언론』. 서울: 일조각.

- 최정태 (1994). 『한국의 관보』. 서울: 아세아문화사(초판 1992년).
- 최 준 (1983).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초판 1960년).
- 한우근 (1992). 『其人制研究』. 서울: 일지사.
- 戈公振 (1982). 『中國報學史』.臺北: 學生書局(초판 1926년).
- 賴光臨 (1978). 『中國新聞傳播史』.臺北: 三民書局(초판 1978년).
- 方漢奇 (1992). 『中國新聞事業通史』(第一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方漢奇·張之華 (主編) (1996). 『中國新聞事業簡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徐培汀 外 (1994). 『中國新聞傳播學說史』. 重慶: 重慶出版社.
- 梁家祿 外 (1987). 『中國新聞業史』.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 王洪祥 (主編) (1988). 『中國新聞史』(古近代部分).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袁軍 外 (1998). 『中國新聞事業史教程』.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 李明水 (1987). 『日本新聞傳播史』(六版).臺北: 大華晚報社.
- 朱傳譽 (1967). 『宋代新聞史』.臺北: 商務印書館.
- 曾虛白 (1984). 『中國新聞史』.臺北: 三民書局(초판 1966년).

(투고일자: 2008.05.30, 수정일자: 2008.07.08, 게재확정일자: 2008.07.21)

Considering a Few Issues on ‘Chobo’

Handwritten Chobo’s Origin, Name, Discontinuance
& Privately Printed Chobo

Young–Ju Kim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the issue of Chobo’s origin, which has not been clearly determined thus far. Also, the research investigates Chobo’s name, time point of discontinuance, character of the article on disaster, and civil-printed incident of Chobo during King Sunjo. As an internal bulletin, handwritten Chobo began to come out at the end of 15th century, roughly King Sungjong period of Chosun Dynasty. Systematically developed in the period of King Jungjong, it had continuously been released until November, 1907 when fairly organized and competitive commercial daily newspapers were published and when the office of secretary named Biseogam was abolished. Because handwritten Chobo was exclusive and narrow in its communication nature and difficult to read it’s fast handwritten Nancho calligraphic style, in August, 1577 (10th year of King Sunjo) a few civilian in Seoul obtained a permission from authorities (Uijungboo and Sahunboo) published a wooden type printed Chobo. Unfortunately, privately printed Chobo was forced to cease in 3 month because of King Sunjo’s oppressive measure. However, considering it was published for a profit by civilian and used the world’s first type printing, it is highly probable that Chobo seems to be the world’s first type printing commercial daily newspaper.

Key words: Chobo’s origin, Chobo’s name, Chobo’s discontinuance, Chobo’s forms, the world’s first type printing commercial daily newspaper.